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7. 20.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년 7월 2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7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7. 13)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1. 제안이유

가. 상위 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무·법령을 정비하고 부서명칭 변경 등에 따라 위탁사무를 조정하여

나.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정책팀

(1) “경제과”에서 “경제정책팀”으로 부서명칭 변경

(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북사무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로 위탁대상기관 명칭변경

나. 전략산업팀

- (1) “첨단산업과”에서 “전략산업팀”으로 부서명칭 변경
- (2) “충북과학기술 발명대회”에서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으로 위탁대상 사무명 변경
-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과학기술관련 법인”으로 위탁대상기관 변경

다. 기업지원팀

- (1)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팀”으로 부서명칭 변경

라. 환경과

- (1)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수렵 강습운영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사)대한수렵협회에 위탁하였던 ‘수렵강습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사무에서 삭제

마. 청소년아동과

- (1)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아동과”로 부서명칭 변경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이번에 제출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법령 개정에 따른 위탁대상기관 명칭 변경과 위탁사무의 삭제, 위탁대상기관 변경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종합의견

- 전략산업팀 소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중 충북과학 기술혁신대전 위탁대상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과학기술관련 법인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정보통신 담당관실	1	○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에 관한 사항 · 인터넷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 ·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	(재단법인)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지방자치법 제95조
경제정책팀	2	○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다음 사무 ·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 지방기능경기대회중 부정행위자에 대 한 제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	기능장려법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 동법시행 령제36조
전략산업팀	3	○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	과학기술관련법인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 육성에관한 법률 제 40조 제2항, 제56조, 동법시행 령 제48조 제3항
	4	○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 · 도 공예품경진대회	충북공예협동조합 청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60조및동법시행령 제45 조

대상실과	일련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기업지원팀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사무 •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	청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56조,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
	6	○ 산업단지 관리권한에 관한 사항 • 청주지방산업단지 • 현도지방산업단지 • 부용지방산업단지 • 대소산업단지 • 대풍지방산업단지 • 오창과학산업단지 (공단 임대사무 포함)	청주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현도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부용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대소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대풍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
보건위생과	7	○ 한센이동진료사업 업무	한국한센복지협회충청북도지부	전염병예방법 제23조, 제48조
청소년아동과	8	○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청소년관련법인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이 조례 시행전 위탁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민 간 위 탁 사 무

현 행					개 정 안				
대 상 실 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탁대상 기 관	근거 및 적용법규	대 상 실 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탁대상 기 관	근거 및 적용법규
정보통신 담당관	1	(생략)			정보통신 담당관		(현행과 같음)		
경제과	2	(생략)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충북 사무소	기능장려법제11조,제13조 제5조,제22조 동법 시행령제 35조제 3항	경 제 정책팀		(현행과 같음)	한국산업 인력공단 충북지사	기능장려법제 11조,제13조 제15조,제22 조,동법시행령 제36조
첨 단 산업과	3	○과학기술진흥에 관한사무 ·충북과 학기술 발명대회	한국산업기술진 흥협회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제1항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 성에관한법률제 40조제2 항 제6 조 동법시행령제 48조제3항	전 락 산업팀		○과학기술진흥 에관한사무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	과학기술관 련법인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 업육성에관한 법률제40조제 항제56조 동 법시행령제48 조제3항
	4	(생략)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 한법률 제40조 동 법시행령제45조					(현행과 같음)
기 업 지원과	5 ~6	(생략)			기 업 지원팀		(현행과 같음)		
보 건 위생과	7	(생략)			보 건 위생과		(현행과 같음)		
산림과	8	○수렵강습 운영에 관한사무 ·수렵강습회개최 ·수렵강습이수증 교부	(사단법인) 대한수렵협회	조수보호수렵에 관한법률 제 15조 제1항,제 3항 제 27조, 동 법시행령 규칙제11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체육청 소년과	9	(생략)			청소년 아동과	8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경제정책팀

【기능장려법】

- 제11조 (국내기능경기대회)** ①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 ③삭제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 기타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상금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기능 경기대회

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각각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부정행위자 제재) ①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기능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관련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6조 (권한의 위탁대상 단체)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관련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기능인단체 또는 기능관련단체의 대표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관련단체의 대표자
3. 기타 노동부장관 또는 당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능관련단체의 대표자

전략산업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0조제4항, 제11조, 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7조·제38조·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등)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안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6.2.9>

1. 경영안정을 위한 소요자금
2. 제품의 판로확보
3. 제품개발·품질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환 경 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수렵면허) ②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 ①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7조(수렵강습) ①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다)에서 실시하는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②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받은 자에게 강습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8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갖추어 별지 제57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의 강습과목에 관한 석사 이상 학위의 소지자
2. 수렵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3.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강습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제59조(수렵강습) ①수렵강습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예정일 30일 전에 일시·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과목과 과목별 강습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③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

제60조(수강신청 등)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개시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이수증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에 의한다.

③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 이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 교부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수렵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는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7조(수렵면허) ②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종면허 : 총기(공기총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수렵
2. 2종면허 : 공기총(압축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수렵
3. 3종면허 : 총기(공기총을 포함한다)외의 엽구를 사용하는 수렵

제8조(수렵면허 등) ①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수렵에 관한 법령
2. 조수의 식별 및 보호·번식에 관한 사항
3. 수렵의 절차
4. 엽구의 사용법
5. 안전사고의 방지

제15조(수렵강습) ①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렵에 관한 법령, 조수의 식별, 엽구의 사용 기타 조수가 보호·번식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③삭제<99.3.31>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시·도지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환경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수렵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수렵강습) ①시·도지사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

강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예정일 20일전에 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과목과 과목별 강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강 습 과 목	강습시간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1시간
조수의 식별 및 보호·번식에 관한 사항	1시간
엽구의 사용법 및 안전사고의 방지	1시간

제31조(수강신청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강습개시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의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시·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수렵강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렵강습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이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렵강습이수증 교부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